

# 안전확인 안전기준

## 수유패드

부속서 69

### (Nursing Pads)

#### 1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수유패드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. 수유패드란 모유수유 기간 동안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유부가 착용하는 직물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.

#### 2. 관련표준

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.

**KS K 0147**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

**KS K 0733** 섬유 및 가죽제품의 오염화석탄산(PCP)함유량 측정방법

**KS K 0734** 폴리에스테르 섬유제품중의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방법

**KS K ISO 3071** 텍스타일-수성 추출액의 pH 측정

**KS K ISO 14184-1** 텍스타일-포름알데히드 측정-제1부: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(증류수 추출법)

**KS Q 1003** 랜덤 샘플링 방법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
#### 3. 종류

적용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##### 3.1 직물 수유패드

##### 3.2 부직포 수유패드

##### 3.3 혼합재질 수유패드

#### 4. 구성 및 재료

피부 접촉면, 흡수층, 겉면 또는 방수층 등으로 구성되며 재료는 표시내용과 같아야 한다.

**4.1 피부 접촉면**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면으로 구성상 최상위층에 있는 면을 말한다.

**4.2 흡수층** 흡수하는 층으로 구성상 중간층에 있는 면을 말한다.

**4.3 겉면 또는 방수층** 구성상 최하위층에 있는 면으로 흡수된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수하는 면 등을 말한다.

#### 5. 안전요건

6.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표 1 안전요구 사항

항 목	기 준 치	
pH	3.0 ~ 10.0	
형광증백제	검출되지 않을 것	
폼알데하이드 함유량 (mg/kg)	20 이하	
염소화페놀류 (mg/kg)	PCP <sup>1)</sup>	0.5 이하
	TeCP <sup>2)</sup>	0.5 이하
아조염료 <sup>3)</sup> (mg/kg)	각각 30이하	
납 <sup>4)</sup> (mg/kg)	300 이하	
카드뮴 <sup>4)</sup> (mg/kg)	75 이하	

비 고 1 PCP란 pentachlorophenol로서 P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.

2 TeCP란 2,3,5,6-tetrachlorophenol로서 TeCP자체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TeCP 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.

3 염색한 경우만 적용한다.

4 페인팅, 코팅,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함

## 6. 시험방법

**6.1 pH** pH의 시험은 **KS K ISO 3071**에 따른다. 단, 시험편은 **피부 접촉면**을 시험하고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.

**6.2 형광증백제** 보건복지부 **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** 중 '넵킨'에 대한 형광증백제 시험방법을 따른다. 단 시험편은 피부접촉면만 채취하여 시험한다.

**6.3 폼알데하이드 함유량**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시험은 **KS K ISO 14184-1**에 따른다. 단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.

**6.4 염소화페놀류 함유량**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시험은 **KS K 0733**에 따른다. 단 흡수층이 있는 경우 흡수층을 제거하고 시험한다.

**6.5 아조염료 함량** 아조염료 함량 시험은 **KS K 0147, 0734**에 따른다. 단 시험편은 염색한 부위만 채취하여 시험한다.

**6.6 납 및 카드뮴 함량**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.

## 7. 검사방법

**7.1 모델의 구분** 수유패드의 모델은 **3**에 의한 종류별, 주요재질별로 구분한다. 여기서, 재질별이란 구성 성분 중 단일 성분 함량이 60 %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다만 단일 성분 함량이 60 % 미만인 경우 구성 성분 중 함유량이 큰 것부터 합산하여 70 % 이상이 되는 각각의 구성 재질별로 구분한다.

**7.2 시료채취방법** 필요할 경우 **KS Q 1003**에 따른다.

**7.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**은 다음에 따른다. 다만, 합부판정 시 표 시사항은 제외한다.

검사구분	시료의 크기(n)	합격판정 갯수(Ac)	불합격판정 갯수(Rc)
안전확인	1	0	1

주) 시료의 크기(n):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

## 8. 표시사항

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 다만,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8.1 재 료 주재료명을 표기하며 안감, 흡수층, 방수층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.

8.2 포장단위 최소 판매단위 개수로 표시한다.

8.3 제조연월

8.4 제조자명

8.5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
8.6 주소 및 전화번호

8.7 제조국명

8.8 사용상의 주의사항

8.8.1 영·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

8.8.2 피부에 발진 등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할 것

8.8.3 기타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추가 주의 사항(필요시)

제 정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-0175호(2012.04.25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-685호(2015.12.30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-032호 (2017. 2. 8)